

광주지방법원 2016. 4. 21 선고 2015가단40123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6. 3. 24.

판결 선고 2016. 4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광군 C 대 575㎡ 중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ㄴ, ㄹ, 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33㎡ 규모의 시멘트블록조 건물, 같은 도면표시 ㄱ, ㄴ, 스, ㅇ, □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3㎡ 규모의 시멘트블록조 건물을 각 철거하고, 위 (가) 부분 33㎡ 토지 및 (나) 부분 3㎡ 토지를 각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전남 영광군 C 대 575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는 D 소유였으나, 원고가 2014. 10. 1.

D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33㎡ 규모의 시멘트블록조 건물, 같은 도면 표시 □, ▨, 入, ○, □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3㎡ 규모의 시멘트블록조 건물이 세워져 있다.

【인정 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침범하여 세운 위각 건물을 철거하고, 위 각 건물의 위치한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1983. 11. 24.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남 영광군 F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각 건물을 세워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위각 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, 2003. 11. 23. 무렵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.

부동산에 관한 점유험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자신의 명의 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버리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(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다22883 판결, 1995. 9. 5. 선고 95다24586 판결, 2003. 8. 19. 선고 2001다47467 판결 등 참조)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.

비록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이후인 2014. 10. 2.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, 피고는 취득시효의 항변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. 따라서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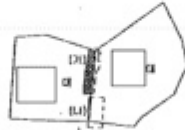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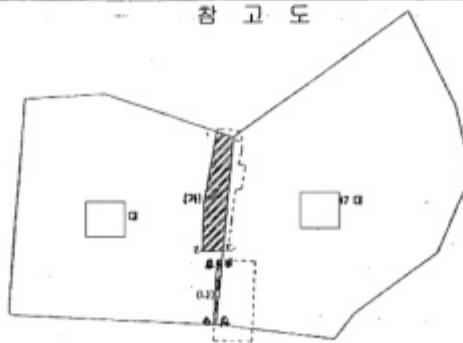
판사 이기선

토지소재: 영광군 [] 2 필

축척: 1200 :



참 고 도



토 지

지번,지목	소유자	부호 및 면적	비 고
[] 대지	[] (원,고)	[] (가) 부분경유면적 33㎡	건물 외부
		[] (나) 부분경유면적 3㎡	